임금피크제 운영규정

임금피크제 운영규정

100분의 59, 2차년도 100분의 59를 기준급에 편입하여 지급한다.<4세 2016.6.30<선설 2017.9.20> ③ 별정직 직원의 보수는 매년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.

④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을 따른다.

제8조 (경영성과급) ① 정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별정적 직원에게 정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 (복리투쟁 등) ① 발정적 작원의 복지는 복리후생규정에 따르되, 선택적복리후생비 복지포인트는 전책일을 포함한 복지포인트 총액을 기준으로 1차년도에는 100분의 59, 2차년도에는 100분의 59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여 지급한다.

② 별정직 직원의 여비는 여비규정을 따르되, 3급이하 직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③ 복리후생항목 등 감액과 판련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0조 (회직급) ① 별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전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6.6.30>

② 별정적으로 전적 당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.

제11조 (교육훈련) 이사장은 별정적 직원에 대하여 담당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 (근무시간 등) ① 발정의 직원의 근무시간은 09:00~18:00까지로 하고 휴식시간은 12:00~ 13:00까지 1시간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취업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임금이 축소점에 따라 근로시 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단축시간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9:226>

② 별정적 직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고, 해당부서의 장은 별정적 직원의 근태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. <계정 2019.2.26>

제13조 (복무) 별정직 직원은 다음 각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(성실의 의무) 법령을 준수하며 공단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- (복종의 외무) 업무를 수행한 때 소속장의 업무와 관련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 다만,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건술할 수 있다.
- 3. (적무이탈 금지) 소속장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청림의 의무)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항응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, 업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직원간에 금품 등을 중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.
- (영리업무 및 검직제한)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6. 삭제 <2019.2.26.>

임금피크제 운영규정

2015.8.31.제정(규정제1072호) 2016. 5. 9 인봉제규정 제정(규정제108호) 2016.6.30.제정(규정제108호) 2017. 920 연봉제규정 개정(규정제1143호) 2017.12. 4 제구원본리규정 개정(규정제1168호) 2019.22.6. 제정(규정제1168호)

第12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, 보수, 복지, 직무 및 정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계정 2017/12-b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임금피크제"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. 2. "임금조정기간"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.

가. 1차년도 : 만 58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 59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

나. 2차년도 : 만 59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

제3조 (적용법위) ① 이 규정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인사, 보수, 복지, 직무 및 정원 등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

계4조 (전격) 직원은 만58세에 도달하는 날의 반기 마지막 날에 별정적으로 자동 전적한다.<개 정 2016.6.30>

제5조 (직무부여 등) ①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출신직렬, 정력, 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직 무를 부여한다.

② 별정직 직원에 대한 직무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 (정원) 별정직에 대한 정원은 이사장이 별도로 관리 한다.

제7조 (单午) ① 기준급, 적무급 및 명절상여금은 전적일을 포함한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1차년 도 100분의 59, 2차년도에는 100분의 59를 지급한다. 다만, 업무성화급은 전적일을 포함한 1 년간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한다<해정 201659, 2016650, 2017920>

② 2급이상 직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업무성과급을 전직 전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1차년도

- 2 -

임금피크제 운영규정

제14조 (制정) 별정찍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평정을 시행하며, 기타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5조 (정계) 별정직 직원에 대한 정계는 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16조 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제규정에 따른다.

부 최 <2015.8.3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 <2016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5항 중 "다음 반기 첫째 날"을 "반기 마지막 날"로 한다.

부 최(연봉제규정) <2017.9.20, 규정 제114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계정) ① 생략

② 생 략

③ 생 략

④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"기준급, 직무급, 명절상여금 및 업무성과급은"을 "기준급, 직무급 및 명절상여금"으 토 하고, 제7조제2항을 "2급이상 직원이 전적한 경우에는 업무성과급을 전적 전 1년간 급 여물 기준으로 1개년도 100분의 59, 2차년도 100분의 59를 기준급에 편입하여 지급한다." 으로 신설한다.

부 최 <2017.12.4., 제규정관리규정 개정>

임금피크제 운영규정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법률 제14939호(2017.10.24) 및 정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 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"교통안전공단 법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한다.



이 규정은 201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